

르엘 신반포 청약 안내

르엘 신반포는 수도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아파트이며, 본 아파트는 1순위 청약조건 사항을 확인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분양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5	3월	16	17	18	19	20
					모집공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1	2	3
		1순위 청약 (해당)	1순위 청약 (기타)	2순위 청약		4
5	4월	6	7	8	9	10
					당첨자 발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약 1일차	계약 2일차	계약 3일차
						25

■ 주요일정

구분	일반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1년이상 거주)	일반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1년 미만 거주, 경기도·인천시 거주)	일반 2순위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시 거주)	당첨자발표	서류제출기간(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3월 30일(월요일)	3월 31일(화요일)	4월 1일(수요일)	4월 9일(목요일)	4월 14일(화요일)~ 4월 20일(월요일)	4월 22일(수요일)~ 4월 24일(금요일)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자격검증 필요서류 - 청약신청자격 서류 (10:00~16:00)	계약서류 지참하여 견본주택 방문 (10:00~16:00)
장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청약홈 앱			•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4 르엘캐슬 갤러리)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모바일(스마트폰) 서비스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1순위 청약 자격 요건 확인(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① 귀하는 세대주이십니까?(청약신청자) Yes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계약 포기한 경우 포함)된 사실이 없습니까?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Yes

③ 무주택이거나, 1주택 (분양권 등 포함)만 소유하고 계십니까?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Yes

④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하셨습니다습니까? (청약신청자) Yes

⑤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십니까? Yes

※ 해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 해외 거주로 인정, 90일 이하 단순 해외여행, 어학연수, 출장 등은 국내 거주로 인정
 (다만, 해외 거주 기간이 연간 183일 초과 시 국내거주로 간주하지 않음)
 ※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로 출국시 해당국가에 계속 거주로 간주

①~⑤ 모두 해당할 경우	①~④ 모두 해당할 경우	①~④ 중 하나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
1순위 (해당) 청약접수 가능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	2순위 청약접수 가능 (단, 청약통장 필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으로 서울특별시 1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1년 미만 및 수도권 거주자는 1순위(기타)로 청약신청 가능함
 ※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지역(직장 포함)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도 당첨자로 구분됨

잠깐! **르엘 신반포는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 50% 적용으로 무순위 사전청약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 단, 예비입주자 공급 후에도 잔여세대 발생시 별도 공고를 통하여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주택형별 가점제 / 추첨제 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85㎡ 이하	100%	0%
85㎡ 초과	50%	50%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①75% 무주택자 우선공급 ②25% 무주택자+1주택 처분 서약자

※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됨(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 가능함)

■ 청약 가점제란?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총점 84점]

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총32점)	만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	0	4년 이상 ~ 5년 미만	1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1년 미만	2	5년 이상 ~ 6년 미만	1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1년 이상 ~ 2년 미만	4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2년 이상 ~ 3년 미만	6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15년 이상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② 부양가족수 (총35점)	0명	5	2명	15	4명	25	6명이상	35
	1명	10	3명	20	5명	30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총17점)	2년 이상 ~ 3년 미만	4	6년 이상 ~ 7년 미만	8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3년 이상 ~ 4년 미만	5	7년 이상 ~ 8년 미만	9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4년 이상 ~ 5년 미만	6	8년 이상 ~ 9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15년 이상	17
	5년 이상 ~ 6년 미만	7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청약가점 점수 (총 84점)	본인 청약가점 점수 ① + ② + ③							

■ 가점항목별 유의사항

가점항목	유의사항												
① 무주택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며, 세대원(본인 및 배우자 포함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원 : 본인 또는 세대분리 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형제자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등은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나, 부양가족 산정 시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는 모두 제외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후 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이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과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양도일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② 부양가족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수는 본인을 제외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하며,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수에 해당하지 않음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로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단, 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그 배우자도 세대주여야 함) -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포함) 및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한 경우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기준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려는 경우 미혼자녀로 한정하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자녀(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③ 청약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아래의 예치금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증액 가능하며, 그 외 청약통장의 경우 1일 전 증액하여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전용면적</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h>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85㎡ 이하</td> <td>300만원 이상</td> <td>250만원 이상</td> <td>200만원 이상</td> </tr> <tr> <td>102㎡ 이하</td> <td>600만원 이상</td> <td>400만원 이상</td> <td>300만원 이상</td> </tr> </tbody> </table>	전용면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85㎡ 이하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102㎡ 이하	6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전용면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85㎡ 이하	3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102㎡ 이하	6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① 재당첨 제한 기간 확인

- 재당첨 제한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시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

구분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그 외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당첨일로부터 5년	당첨일로부터 3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당첨일로부터 3년	당첨일로부터 1년

※ 과거 당첨사실 조회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부적격자 당첨 제한

※ 신청인이 입력한 청약 신청내역은 사전 검증절차 없이 청약 접수되며, 전산검색 및 서류검증 결과 착오입력 등 부적격 당첨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첨이 취소되고 아래 기간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구분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	수도권 외	위축지역
제한기간	1년	6개월	3개월